

「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6월 9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6월 18일

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

나. 제안이유

-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2) 설치, 운영,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이용시간, 휴관일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4) 이용 신청·제한, 이용료, 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5) 시설의 보호, 손해배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, 제13조)
- 6) 지도·감독, 준용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물품관리 조례」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관내 여성의 취·창업 및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용시간이 원칙적으로는 평일 18시로 제한되어 있고, 센터의 휴관일을 ‘토요일’로 규정한 것(제6조제1호)은 직장인 여성 등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운영 시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다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권장됨.
- 집행기관은 향후 센터가 여성친화도시 구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내실 있는 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평일 위주의 이용 시간(09:00~18:00)과 휴관일(토요일)은 직장 여성들의 실질적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직장인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.
- 특정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더라도 센터 본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여성 정책과의 연계 상담·홍보 공간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.
- 수탁 대상을 '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'로만 과도하게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저촉될 수 있어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